

2022년 상반기 전문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부동산연구 및 녹색건축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근무지
전문계약직	부동산연구	박사(경력)	대구
		석사(신입)	대구
	녹색건축연구	박사(신입)	대구
	건축물관리연구	박사(신입)	서울
	부동산금융(경력)	1명	대구

※ 직무는 ‘별첨 NCS기반 직무기술서’ 참조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 분야별로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 근무지는 인력 운영상황 등에 따라 배치 조정 가능

2 채용조건

○ (박사) 전문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일로부터 3년

※ ①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②계약기간 종료 후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3년 단위 연장 가능하며, 박사(신입)이 3년 후 연장되는 경우 박사(경력) 연봉 적용

○ (석사·부동산금융) 전문계약직(기간제근로자), 채용일로부터 8개월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연장 불가

3 지원자격

□ 공통사항

- 우리 원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별첨 참조)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

□ 분야별 업무내용 및 지원자격

채용분야		업무내용	지원자격
부동산 연구	박사 (경력)	부동산 정보·정책·시장, 해외사업 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및 실무 경력 3년 이상 * 경제·도시경제, 부동산, 도시공학·도시계획, 행정학, 통계학, 공간정보학 등 유사 전공
	석사 (신입)	부동산 정보·정책 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경제·도시경제, 부동산, 도시공학·도시계획, 행정학, 통계학, 빅데이터, 컴퓨터과학, 컴퓨터공학, 산업공학, 기술경영학, 정보시스템학 등 유사 전공
녹색건축 연구	박사 (신입)	탄소금융상품·녹색건축평가 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건물에너지 시뮬레이션, 탄소중립, 빅데이터, 통계학, 수학, 산업공학, 컴퓨터과학, 기술경영학, 정보시스템학 등 유사 전공
건축물 관리 연구	박사 (신입)	건축물관리제도 개선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건축, 건축물 유지관리 등 유사 전공
부동산금융(경력)		리츠(REITs)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분야 업무경력 10년 이상 * 리츠(REITs), 자산운용 등 부동산금융 유사 분야

※ 관련 분야 학위 및 경력은 공고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
 (단, 학위의 경우 '22년 2월 학위취득 예정자까지 인정하며, 추후 학위증명서 미제출시 합격 취소)

※ 상세 업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4 우대사항

□ 사회적 가치 실현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구 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만점의 3,5,10%	만점의 3,5,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만점의 5%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만점의 3%	만점의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만점의 3%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만점의 3%	만점의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만점의 3%	만점의 3%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가점 부여기준 >

-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가점
 - 단,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는 경우 예외
- ※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자격 우대사항

자 격	서류전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만점의 2%

※ 공고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합격증 포함) 소지자로서 최종합격자 결정일까지 그 소지가 유효하여야 함

□ 우대사항 적용기준

- 전형별로 상기 항목별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

* 항목 내에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 20(목) ~ 2. 4(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 ◆ 입사지원시스템은 공고일('22.1.20)부터 입력 가능하며, 접수마감일 18:00 정각에 자동 종료됨. 마감시간에 임박한 경우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최종 제출 요망
- ◆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최종 제출 전 확인 필요
- ◆ 입사지원서는 공고일 기준('22.1.20) 유효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이 증빙자료와 일치하지 않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하여 서류전형 합격 취소 또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빙자료 확인 후 입사 지원서 작성·제출

□ 제출서류 안내

○ (제출방식)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이미지 파일을 첨부

채용분야		제출서류
부동산연구	박사(경력)	① 논문 및 연구실적* 표지 및 목차 ② 요약서 제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
	석사(신입)	① 논문 및 연구실적* 표지 및 목차 ② 요약서 제출
녹색건축연구	박사(신입)	① 논문 및 연구실적* 표지 및 목차
건축물관리연구	박사(신입)	② 요약서 제출
부동산금융(경력)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논문 및 연구실적에 한하며, 추후 본인이 참여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추후 논문 진위확인 과정에서 본인의 논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을 제출하였음이 적발될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

- ◆ 증빙서류에 본인 확인을 위한 성명, 생일을 제외한 기타 인적사항(예시: 주민등록번호, 출신학교명, 주소, 생년,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림 처리) 후 제출
- ◆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에 한하여 작성·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자격확인 용도로만 활용될 뿐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기타 인적사항이 발견된 경우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

6 전형방식

1 서류전형 → 2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제출 → 3 면접전형 → 4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신용조회 등 실시 예정

1 서류전형

-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

* 평가기준

분야		기준
부동산연구	박사(경력)	학교교육(10), 직업교육(10), 자격증(10), 논문 및 연구실적(30), 직무적합도(40)
녹색건축연구	박사(신입)	
건축물관리연구	박사(신입)	
부동산연구-석사(신입)		학교교육(20), 직업교육(10), 자격증(10), 논문 및 연구실적(20), 직무적합도(40)
부동산금융		자격증(10), 경력사항(50), 직무적합도(40)

* 가감점 사항

- (가점) 공고문 상 우대사항(사회적 가치 실현, 자격) 대상자
- (감점) 자기소개서(경력 및 경험기술서 제외) 일부 부실작성자(항목별 2점~3점)

-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로 결정
 - * 역량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단위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예외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동점자처리)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2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제출(결격사유 및 허위여부 확인용)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제출서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기준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기재사항 증빙서류 안내 >

※ 해당자 제출

1.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 채용시험 가점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2. 장애인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1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각 1부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1부
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임을 증빙하는 증명서(부모의 출신국적 표기) 1부
7.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 이수내역 증빙자료(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각 1부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내역(학교교육, 직업교육) 포함 필수
 - *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수료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자료에 한함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총괄) 2급 이상 인증서 1부
9.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격증(합격증 포함) 또는 등록증 1부
 - * 원본제출이 불가능한 서류(자격증, 수료증 등)의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본인 확인을 위한 성명, 생일을 제외한 기타 인적사항(나이, 사진, 출신학교명 등)은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

- ◆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의 사본 스캔 파일만 인정되며, 인터넷 조회 화면을 캡처하거나, 휴대폰 등 카메라로 촬영한 파일은 인정하지 않음
-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하고,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에 밝혀질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제출방식)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하여 별도 기간 내 메일 송부
- (서류전형 합격취소)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서류전형의 합격을 취소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서류전형 불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서류전형 합격이 취소된 인원만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 * 동점자 발생시 전원 면접대상자 선정
 - ** ①적격심사 부적격자, ②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이 불가능한 자는 대상자 선정 제외함

3 면접전형

-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
- (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구 분	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정보능력 ⑤조직이해능력
직무수행능력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결정
 - * 단, 각 면접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단위 선발예정인원의 30%(소수점 이하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예외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동점자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구분	상세기준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지원(보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전형 고득점자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 고득점자
4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전형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태도 → 발전가능성 → 창의성 → 필요기술 → 필요지식 순서별 고득점자

4 최종합격자 결정

○ 증빙서류 검토결과 “합격” 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 단,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에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 ◆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성실복무에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 취소

7

전형일정

구 분	일 자
모집 - 공고일 - 입사지원서 접수	1.20(목) 1.20(목)~2.4(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월 중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3월 초
제출서류 검토	3월 중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3월 중
입사 예정일	3월 말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 등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일정변경 등의 안내는 개별연락 또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를 통해 공고

8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서류(결격사유 및 진위여부 확인용)

- ◆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의 사본 스캔 파일만 인정되며, 인터넷 조회 화면을 캡처하거나, 휴대폰 등 카메라로 촬영한 파일은 인정하지 않음
-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에 밝혀질 경우 합격 취소)

제출대상 : 면접전형 합격자

제출시기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별도 기한 내

* 제출서류 누락 시 최종합격자 발표 前일 정오까지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제출서류(공통)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준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 증명서 1부
 - *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3.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전역예정증명서 1부(군 복무 중인 자)
4. 통장사본 1부

□ 제출서류(해당자)

※ 공고일 이후 발급분 기준

1. 분야별
 - 가. 부동산연구분야 및 녹색건축연구, 건축물관리연구분야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논문 및 연구실적에 대한 표지 및 목차, 요약서(3페이지 내외) 각 1부
 - * 논문 및 연구에 본인이 참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나. 부동산금융
 -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분) 각 1부
2.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기재하신 내용이 있는 경우[박사(경력), 부동산금융(경력)분야 외]
 -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나.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분) 1부
3.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 * 채용시험 가점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4. 장애인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1부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각 1부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1부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임을 증빙하는 증명서(부모의 출신국적 표기) 1부
9.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 이수내역 증빙자료(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각 1부
 -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내역(학교교육, 직업교육) 포함 필수
 - *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수료자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자료에 한함
10.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총괄) 2급 이상 인증서 1부
11.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격증(합격증 포함) 또는 등록증 1부

* 원본제출이 불가능한 서류(자격증, 수료증 등)의 경우 사본 제출 가능

9 근무조건

□ 보수 및 근무지역

구 분		연봉(성과급 포함) ¹⁾	근무지 ²⁾
전문 계약직	부동산연구	박사(경력)	80,000천원 내외
		석사(신입)	60,000천원 내외
	녹색건축연구	박사(신입)	70,000천원 내외
	건축물관리연구	박사(신입)	70,000천원 내외
	부동산금융(경력)		100,000천원 내외
			대구

- 1)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 별도, 성과급은 변동 가능함
- 2) 근무지 : 인력 운영상황 등에 따라 배치 조정 가능하며, 생활근거지 외 지역에서 근무시 합숙소 제공
- 3) 기타사항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전문직) 전환 불가
 - 박사는 계약기간 종료 후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3년 단위 연장 가능하며, 박사(신입)이 3년 후 연장되는 경우 박사(경력) 연봉 적용
 - 박사(경력)은 경력수준에 관계없이 동일보수 적용
 - 석사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연장 불가

10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하오니 안전한 면접장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면접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신분확인 시간 제외)해야 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면접장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의 제재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가 전형에 응시하여 감염증 확산 등의 물의를 일으킬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상기사항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전형단계 별로 상세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형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1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력될 경우 각 전형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서류전형 합격취소 또는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 사실 및 유효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서류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 채용서류반환청구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파일을 전자우편(rebinsa@reb.or.kr)으로 제출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

- 전형별 합격자 및 다음단계 전형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면접전형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중 1개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를 우리 원 홈페이지(www.reb.or.kr)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전형 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자 : 채용전형 불합격자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 파일을 전자우편(rebinsa@reb.or.kr)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해야 하며 개인사정으로 입사유예는 불가능합니다.(입사예정일 미 출근 시 입사포기로 간주)
-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채용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원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 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국부동산원 채용관리요강>

- 제17조(채용부정행위의 금지)** 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3. 채용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부정행위를 통해 부정합격한 사람은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우리 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부정행위, 전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포함한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 부패신고센터(K-Whistle)

12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인사관리부 채용담당자(☎053-663-830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1. 20.

